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배명호 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에 대한 수당지급에서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로 확대 지급

나. 보훈예우수당 인상(안 제8조제2항)
-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
다. 기 타
· 조례안예고 : 의견 없음〔2017.11. 9~11.13.(5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호의”를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 ---------- ---------- ---------- ----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 ---------- ----------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5만원---- ---. ---------- ---------- ----------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 확대와 지급금액 인상으로 매년 군비로 지원금이 소요될 예정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세입		0	0	0	0	0	0
	소계(a)	0	0	0	0	0	0
세출	○ 지원금	172,800	172,800	172,800	172,800	172,800	864,000
	소계(b)	172,800	172,800	172,800	172,800	172,800	864,000
□총 비용(a-b)		-172,800	-172,800	-172,800	-172,800	-172,800	-864,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72,800	172,800	172,800	172,800	172,800	864,000
민간							
기타							
합계		172,800	172,800	172,800	172,800	172,800	864,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주사 이호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조례 개정전			지급범위 확대		지급액 확대		연간추가 소요액	연 간 총소요액
	인원	지급액	연 간 소요액	인원	소요액	금액	소요액		
2018년	204	30	73,440	84명	50,400	20	48,960	99,360	172,800
2019년	204	30	73,440	84명	50,400	20	48,960	99,360	172,800
2020년	204	30	73,440	84명	50,400	20	48,960	99,360	172,800
2021년	204	30	73,440	84명	50,400	20	48,960	99,360	172,800
2022년	204	30	73,440	84명	50,400	20	48,960	99,360	172,800
계			367,200		252,000		244,800	496,800	864,000

※ - 지급인원은 2017. 8월 지급인원 기준

- 2017년 7월초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 558명
 · 참전수당지급대상자(보훈수당제외) : 154명
 · 65세 미만자 : 116명
 · 1호~18호까지 확대시 증가인원 : 84명(전체지급예상인원 288명)